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3조 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이 은 정)